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99-234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5.04.17. 이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17.(금)	2026.04.27.(월)	2026.04.28.(화)	2026.04.29.(수)	2026.05.07.(목)	2026.05.09.(토) ~ 2026.05.13.(수)	2026.05.20.(수) ~ 2026.05.22.(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2호의 3, 제 2조 제 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7호의 2, 제 23조 제 4항, 제 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 3조, 제 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간주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함)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간주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 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잔여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잔여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제 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27/main/index.do>)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 2호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 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 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5항 및 제 23조 제 2항 제 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 가능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 65조 및 「주민등록법」 제 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6조에 따라 「주택법」 제 64조 제 1항 및 제 65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7조 제 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9조 제 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1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5.04.1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4.27.(월)	2026.04.28.(화)	2026.04.29.(수)	2026.05.07.(목)	2026.05.09.(토) ~ 2026.05.13.(수)	2026.05.20.(수) ~ 2026.05.22.(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94)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조 제 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 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 9조 별표1 규정에 의거,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광주시 주택과 - 20272호(2026.04.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산54-3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32층 7개동 일반분양 1,077세대
[특별공급 521세대(기관추천 92세대, 다자녀가구 102세대, 신혼부부 217세대, 노부모부양 27세대, 생애최초 83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000107	01	059.9299A	59A	59.9299	21.9541	81.8840	61.3858	143.2698	31.6390	57	5	5	13	1	5	29	28	2
	02	059.8802B	59B	59.8802	22.6292	82.5094	61.3349	143.8443	31.6128	51	5	5	11	1	4	26	25	2
	03	059.9281C	59C	59.9281	21.9468	81.8749	61.3840	143.2589	31.6381	96	9	9	22	2	8	50	46	3
	04	084.9099A	84A1	84.9099	29.1794	114.0893	86.9728	201.0621	44.8268	82	8	8	18	2	7	43	39	3
	05	084.9326B	84B	84.9326	30.2496	115.1822	86.9959	202.1781	44.8388	477	47	47	109	14	42	259	218	14
	06	084.9481C	84C	84.9481	30.6213	115.5694	87.0118	202.5812	44.8470	79	7	7	18	2	7	41	38	2
	07	084.8671D	84D	84.8671	29.9533	114.8204	86.9289	201.7493	44.8042	114	11	11	26	3	10	61	53	4
	08	114.9276A	114A1	114.9276	38.4511	153.3787	117.7197	271.0984	60.6742	57	-	5	-	1	-	6	51	2
	09	114.9574B	114B	114.9574	40.1665	155.1239	117.7502	272.8741	60.6899	56	-	5	-	1	-	6	50	1
	10	162.7498A	162PHA	162.7498	60.4953	223.2451	166.7037	389.9488	85.9211	1	-	-	-	-	-	-	1	-
	11	162.3499B	162PHB	162.3499	60.4923	222.8422	166.2942	389.1364	85.7100	2	-	-	-	-	-	-	2	-
	12	170.5257A	170PH	170.5257	61.3913	231.9170	174.6685	406.5855	90.0263	1	-	-	-	-	-	-	1	-
	13	170.3095B	170	170.3095	62.1078	232.4173	174.4471	406.8644	89.9121	1	-	-	-	-	-	-	1	-
	14	225.6083	225	225.6083	79.2750	304.8833	231.0895	535.9728	119.1062	1	-	-	-	-	-	-	1	-
	15	250.5785	250	250.5785	90.5223	341.1008	256.6664	597.7672	132.2889	1	-	-	-	-	-	-	1	-
	16	260.5379	260	260.5379	94.4060	354.9439	266.8677	621.8116	137.5468	1	-	-	-	-	-	-	1	-
합 계										1,077	92	102	217	27	83	521	556	33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A1]으로 표기된 타입은 차후 분양 예정인 2단지에서 전용면적은 동일하나 구조가 다소 차이가 있는 타입이 존재하여, 구분을 위해 임의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PH]가 포함된 타입은 펜트하우스를 의미하며, 해당 동별 최상층에 위치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059.9299A	059.8802B	059.9281C	084.9099A	084.9326B	084.9481C	084.8671D	114.9276A	114.9574B	162.7498A	162.3499B	170.5257A	170.3095B	225.6083	250.5785	260.5379
약식표기	59A	59B	59C	84A1	84B	84C	84D	114A1	114B	162PHA	162PHB	170PH	170	225	250	260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59A	59B	59C	84A1	84B	84C	84D	114A1	114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1	8	1	1	-	-	1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1	8	1	1	-	-	1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1	8	1	1	-	-	14	
	중소기업 근로자	1	1	2	2	8	1	3	-	-	18	
	장애인	경기도	1	1	2	1	9	1	3	-	-	18
		서울특별시	-	-	1	1	3	1	1	-	-	7
인천광역시		-	-	1	1	3	1	1	-	-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시·도 거주자(50%)	3	3	5	4	24	4	6	3	3	55	
	기타지역 거주자(50%)	2	2	4	4	23	3	5	2	2	47	
신혼부부 특별공급		13	11	22	18	109	18	26	-	-	21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2	2	14	2	3	1	1	27	
생애최초 특별공급		5	4	8	7	42	7	10	-	-	83	
합 계		29	26	50	43	259	41	61	6	6	52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내	2027. 1. 20	2027. 10. 20	2028. 7. 20	2029. 5. 23	2029. 10. 19	2030. 3. 20	입주지정일
59A	104동 5호 107동 5호	1층	1	194,602,000	384,398,000	-	579,000,000	10,000,000	18,95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202,650,000
		2층	2	197,963,000	391,037,000	-	589,000,000	10,000,000	19,45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206,150,000
		3~10층	16	208,046,000	410,954,000	-	619,000,000	10,000,000	20,95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216,650,000
		11~20층	20	211,407,000	417,593,000	-	629,000,000	10,000,000	21,45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220,150,000
		21층이상	18	214,768,000	424,232,000	-	639,000,000	10,000,000	21,95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223,650,000
59B	104동 6호 107동 6호	1층	1	191,241,000	377,759,000	-	569,000,000	10,000,000	18,45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199,150,000
		2층	2	194,602,000	384,398,000	-	579,000,000	10,000,000	18,95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202,650,000
		3~10층	16	204,685,000	404,315,000	-	609,000,000	10,000,000	20,45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213,150,000
		11~20층	20	208,046,000	410,954,000	-	619,000,000	10,000,000	20,95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216,650,000
		21층이상	12	211,407,000	417,593,000	-	629,000,000	10,000,000	21,45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220,150,000
59C	104동 1호 105동 1호	1층	2	194,602,000	384,398,000	-	579,000,000	10,000,000	18,95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202,650,000
		2층	2	197,963,000	391,037,000	-	589,000,000	10,000,000	19,45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58,900,000	206,150,000
		3~10층	16	201,324,000	397,676,000	-	599,000,000	10,000,000	19,95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209,650,000
		11~20층	20	204,685,000	404,315,000	-	609,000,000	10,000,000	20,45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213,150,000
		21층이상	24	208,046,000	410,954,000	-	619,000,000	10,000,000	20,95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216,650,000
	107동 1호	1층	1	184,519,000	364,481,000	-	549,000,000	10,000,000	17,45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92,150,000
		2층	1	187,880,000	371,120,000	-	559,000,000	10,000,000	17,95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55,900,000	195,650,000
		3~10층	8	191,241,000	377,759,000	-	569,000,000	10,000,000	18,45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199,150,000
		11~20층	10	204,685,000	404,315,000	-	609,000,000	10,000,000	20,45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213,150,000
		21층이상	12	208,046,000	410,954,000	-	619,000,000	10,000,000	20,95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216,650,000
84A1	101동 2호	2층	1	276,274,000	545,726,000	-	822,000,000	10,000,000	31,1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287,700,000
		3~10층	8	279,635,000	552,365,000	-	832,000,000	10,000,000	31,6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291,200,000
		11~20층	10	282,996,000	559,004,0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21층이상	2	286,357,000	565,643,000	-	852,000,000	10,000,000	32,6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98,200,000
	102동 4호 103동 4호	1층	1	272,913,000	539,087,000	-	812,000,000	10,000,000	30,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84,200,000
		2층	1	276,274,000	545,726,000	-	822,000,000	10,000,000	31,1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287,700,000
		3~10층	16	289,718,000	572,282,000	-	862,000,000	10,000,000	33,1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301,700,000
		11~20층	20	293,079,000	578,921,000	-	872,000,000	10,000,000	3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305,200,000
		21층이상	23	296,440,000	585,560,000	-	882,000,000	10,000,000	34,1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88,200,000	308,700,000

84B	101동 3호 102동 2호 104동 2호 105동 2호	1층	2	269,552,000	532,448,000	-	802,000,000	10,000,000	30,1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280,700,000
		2층	4	272,913,000	539,087,000	-	812,000,000	10,000,000	30,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84,200,000
		3~10층	32	276,274,000	545,726,000	-	822,000,000	10,000,000	31,1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287,700,000
		11~20층	40	279,635,000	552,365,000	-	832,000,000	10,000,000	31,6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291,200,000
		21층이상	38	282,996,000	559,004,0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101동 4호 102동 3호 103동 3호 104동 3,4호 105동 3호 106동 3호 107동 3,4호	1층	5	269,552,000	532,448,000	-	802,000,000	10,000,000	30,1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280,700,000
		2층	9	272,913,000	539,087,000	-	812,000,000	10,000,000	30,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84,200,000
		3~10층	72	286,357,000	565,643,000	-	852,000,000	10,000,000	32,6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98,200,000
		11~20층	90	289,718,000	572,282,000	-	862,000,000	10,000,000	33,1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301,700,000
		21층이상	90	293,079,000	578,921,000	-	872,000,000	10,000,000	3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305,200,000
	103동 2호 106동 2호 107동 2호	1층	2	259,469,000	512,531,000	-	772,000,000	10,000,000	28,6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77,200,000	270,200,000
		2층	3	262,830,000	519,170,000	-	782,000,000	10,000,000	29,1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78,200,000	273,700,000
		3~10층	24	266,191,000	525,809,000	-	792,000,000	10,000,000	29,6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277,200,000
		11~20층	30	279,635,000	552,365,000	-	832,000,000	10,000,000	31,6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291,200,000
		21층이상	36	282,996,000	559,004,0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84C	101동 1호	2층	1	269,552,000	532,448,000	-	802,000,000	10,000,000	30,1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3~10층			8	272,913,000	539,087,000	-	812,000,000	10,000,000	30,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84,200,000
11~20층			10	276,274,000	545,726,000	-	822,000,000	10,000,000	31,1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287,700,000
102동 5호 103동 5호		2층	1	269,552,000	532,448,000	-	802,000,000	10,000,000	30,1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280,700,000
		3~10층	16	282,996,000	559,004,0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11~20층	20	286,357,000	565,643,000	-	852,000,000	10,000,000	32,6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98,200,000	
	21층이상	23	289,718,000	572,282,000	-	862,000,000	10,000,000	33,1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301,700,000	
84D	101동 5호	1층	1	272,913,000	539,087,000	-	812,000,000	10,000,000	30,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84,200,000
		2층	1	276,274,000	545,726,000	-	822,000,000	10,000,000	31,1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287,700,000
		3~10층	8	289,718,000	572,282,000	-	862,000,000	10,000,000	33,1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86,200,000	301,700,000
		11~20층	10	293,079,000	578,921,000	-	872,000,000	10,000,000	33,6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305,200,000
	102동 1호	1층	1	272,913,000	539,087,000	-	812,000,000	10,000,000	30,6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81,200,000	284,200,000
		2층	1	276,274,000	545,726,000	-	822,000,000	10,000,000	31,1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82,200,000	287,700,000
		3~10층	8	279,635,000	552,365,000	-	832,000,000	10,000,000	31,6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83,200,000	291,200,000
		11~20층	10	282,996,000	559,004,0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21층이상	12	286,357,000	565,643,000	-	852,000,000	10,000,000	32,6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98,200,000
	103동 1호 106동 1호	2층	2	266,191,000	525,809,000	-	792,000,000	10,000,000	29,6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277,200,000
		3~10층	16	269,552,000	532,448,000	-	802,000,000	10,000,000	30,1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80,200,000	280,700,000
		11~20층	20	282,996,000	559,004,000	-	842,000,000	10,000,000	32,1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84,200,000	294,700,000
		21층이상	24	286,357,000	565,643,000	-	852,000,000	10,000,000	32,6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85,200,000	298,200,000

114A1	105동 4호	2층	1	349,297,000	689,730,000	68,973,000	1,108,000,000	10,000,000	45,4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387,800,000
		3~10층	8	358,754,500	708,405,000	70,840,500	1,138,000,000	10,000,000	46,9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398,300,000
		11~20층	10	361,907,000	714,630,000	71,463,000	1,148,000,000	10,000,000	47,400,000	114,800,000	114,800,000	114,800,000	114,800,000	114,800,000	114,800,000	401,800,000
		21층이상	11	365,059,500	720,855,000	72,085,500	1,158,000,000	10,000,000	47,900,000	115,800,000	115,800,000	115,800,000	115,800,000	115,800,000	115,800,000	405,300,000
	106동 4호	2층	1	349,297,000	689,730,000	68,973,000	1,108,000,000	10,000,000	45,4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387,800,000
		3~10층	8	352,449,500	695,955,000	69,595,500	1,118,000,000	10,000,000	45,9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391,300,000
		11~20층	10	355,602,000	702,180,000	70,218,000	1,128,000,000	10,000,000	46,4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394,800,000
		21층이상	8	358,754,500	708,405,000	70,840,500	1,138,000,000	10,000,000	46,9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113,800,000	398,300,000
114B	105동 5호	2층	1	336,687,000	664,830,000	66,483,000	1,068,000,000	10,000,000	43,4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373,800,000
		3~10층	8	346,144,500	683,505,000	68,350,500	1,098,000,000	10,000,000	44,9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384,300,000
		11~20층	10	349,297,000	689,730,000	68,973,000	1,108,000,000	10,000,000	45,4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110,800,000	387,800,000
		21층이상	11	352,449,500	695,955,000	69,595,500	1,118,000,000	10,000,000	45,9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391,300,000
	106동 5호	2층	1	336,687,000	664,830,000	66,483,000	1,068,000,000	10,000,000	43,4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106,800,000	373,800,000
		3~10층	8	339,839,500	671,055,000	67,105,500	1,078,000,000	10,000,000	43,900,000	107,800,000	107,800,000	107,800,000	107,800,000	107,800,000	107,800,000	377,300,000
		11~20층	10	342,992,000	677,280,000	67,728,000	1,088,000,000	10,000,000	44,4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108,800,000	380,800,000
		21층이상	7	346,144,500	683,505,000	68,350,500	1,098,000,000	10,000,000	44,9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109,800,000	384,300,000
162PHA	102동 4호	32층	1	753,447,500	1,487,775,000	148,777,500	2,390,000,000	10,000,000	109,500,000	239,000,000	239,000,000	239,000,000	239,000,000	239,000,000	239,000,000	836,500,000
162PHB	104동 3호	32층	1	759,752,500	1,500,225,000	150,022,500	2,410,000,000	10,000,000	110,5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843,500,000
	107동 3호	32층	1	743,990,000	1,469,100,000	146,910,000	2,360,000,000	10,000,000	108,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826,000,000
170PH	101동 2호	23층	1	784,972,500	1,550,025,000	155,002,500	2,490,000,000	10,000,000	114,5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249,000,000	871,500,000
170	107동 4호	1층	1	379,875,700	750,113,000	75,011,300	1,205,000,000	10,000,000	50,25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120,500,000	421,750,000
225	105동 5호	1층	1	499,670,700	986,663,000	98,666,300	1,585,000,000	10,000,000	69,250,000	158,500,000	158,500,000	158,500,000	158,500,000	158,500,000	158,500,000	554,750,000
250	101동 1호	1층	1	627,347,500	1,238,775,000	123,877,500	1,990,000,000	10,000,000	89,500,000	199,000,000	199,000,000	199,000,000	199,000,000	199,000,000	199,000,000	696,500,000
260	105동 3호	1층	1	652,882,200	1,289,198,000	128,919,800	2,071,000,000	10,000,000	93,550,000	207,100,000	207,100,000	207,100,000	207,100,000	207,100,000	207,100,000	724,850,000

■ 공통 유의 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접수하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실외기실)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음선) 공급금액 미포함 기준이며,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지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총수는 건립 동의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총수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50% 이상 달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건본주택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 대출신청 일정 등 별도 안내)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 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 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제1호 및 제 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 55조의 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 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2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 지역 : 해당 시·도(경기도 광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 50% → 기타지역(서울·인천 거주자)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 건설지역(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 ②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3명 2명	40 35 2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2명 1명	15 10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20 1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5년 이상 ~ 10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15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 855조 제 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 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1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비고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 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 제 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 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 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 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의 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제 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 19조 또는 제 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09 973 2128 143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비고	■ 자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17.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p>※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p> <p>※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p> <p>※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p> <p>※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p> <p>※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 (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p>									

■ 자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 13조 제 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 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42조 제 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단독주택</td> <td style="text-align: center;">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주택 외</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 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 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h style="text-align: center;">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그 밖의 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증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증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 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 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 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 53조 제 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 주민등록표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 4항 및 제 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18 1002 568 1066">단계</th> <th data-bbox="568 1002 1052 1066">비율</th> <th data-bbox="1052 1002 2123 1066">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18 1066 568 1129">1단계</td> <td data-bbox="568 1066 1052 1129">추첨제 물량의 75%</td> <td data-bbox="1052 1066 2123 1129">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 data-bbox="318 1129 568 1193">2단계</td> <td data-bbox="568 1129 1052 1193">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 data-bbox="1052 1129 2123 1193">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 data-bbox="318 1193 568 1257">3단계</td> <td data-bbox="568 1193 1052 1257">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 data-bbox="1052 1193 2123 1257">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현장접수의 경우 아래의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 서류가 누락된 경우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만」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5.07.(목) ~ 2026.05.16.(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6.05.07.(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 확인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및 자격확인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6.05.09.(토) ~ 2026.05.13.(수)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94)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및 제 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구비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간주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 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제3자 대리인 접수 불가) ※ 정부24 온라인인감증명서 제출 시 발급용도 및 제출처 정확히 기재 [발급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제출처 :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 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 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 이상 연속 등재)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 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시설,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체류한 경우)인 경우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 추천서(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 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자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 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3조 제 2항 제 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과거 변동사항 등 포함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이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 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3조 제 2항 제 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점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 2항 제 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점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과거 변동사항 등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점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점자 또는 당점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점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 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점사실 소명 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당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당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불가
	○		위임장	당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존주택 처분조건 청약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3조 제 2항 제 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배우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발급기간 : 생년월일~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1통 필요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로 발급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또는 감중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③ 등기소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④ 신규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 세무서또는등기소 ② 국민연금공단 ③,④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①번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지급조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무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청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류를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 2조 제 2호의 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은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 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홈택스) ②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①,② 세무서(홈택스) ③,④ 해당직장	

- ※ 소득관련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분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 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자산가액증빙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 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이택스(etax.seoul.go.kr) ④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 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 제 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 자산보유기준(3.31억원)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26.05.20.(수) ~ 26.05.22.(금), 3일간 (10:00 ~ 16:00)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본주택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94)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현장수납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완료자는 제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용도에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가능 		
	○		신분증				
	○		자격검증서류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인감도장				
제 3자 대리인 계약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인지세 납부)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용도 : 당첨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 위임용 		
	○		위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신분증, 인장				

- ※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4.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아파트 계약용, 아파트 계약 위임용 등)
- ※ 대리인 계약 시에는 인감증서만 인정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참한 대리인은 계약을 체결하실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주)하나은행	284-910028-13505	신한자산신탁(주)
중도금, 잔금		284-910028-14105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101동 1304호 홍길동 → ”1011304홍길동“)
-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착오 납부 및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운선)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당첨 및 체결된 계약의 취소 및 해약의 사유가 됩니다.
 - ①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②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 3항 제 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참고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하여 당첨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의해 조치됩니다.

(4)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신청 시 사용한 주택형이 아닌, 설계도서상의 주택형으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또는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 또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9조에 준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자격확인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대주, 거주기간, 부적격사유 등)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의 60%(중도금)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 시 대출취급기관 등에 의거 분양대금 5%(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 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이 경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분양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 (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사업주체/분양계약자 각1/2 납부)

「인지세법」 제 3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 (균등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시중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 담당)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제 4항 및 제 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처리일 2의 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 3. 제 2조 제 7호 다 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 1호와 제 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52조 제 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5조 제 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52조 제 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 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 8조 및 제 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 1호 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 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 3조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 10조 제 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 53조 제 9호 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 53조 제 9호 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 27조 제 5항 및 제 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 1호 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 2조 각 호 및 제 3조 제 1항 제 2호·제 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 23조 제 4항 제 1호 또는 제 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VAT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59A, 59B, 59C	20,000,000	2,000,000	18,000,000
84A1, 84B, 84C, 84D	25,000,000	2,500,000	22,500,000
114A1, 114B	33,000,000	3,300,000	29,700,000
162PHA, 162PHB, 170PH, 170	40,000,000	4,000,000	36,000,000
225	66,000,000	6,600,000	59,400,000
250, 260	75,000,000	7,500,000	67,500,000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주)하나은행	284-910028-20305	신한자산신탁(주)
잔금		284-910028-19305	

- 발코니확장 계약(공급)주체 및 확장금액 관리주체(납부계좌 예금주 : 신한자산신탁(주))는 신탁사인 신한자산신탁(주)입니다.
- 견본주택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잔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상기 지정 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발코니확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대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추가선택품목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확장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14호, 제 46조 제 4항, 제 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샷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색채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희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발코니에 선희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확장 세대의 바닥/천정 및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를 부착하여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세대 하부에 위치하는 발코니 확장 세대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규격/수량/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타입, 위치 수량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발코니확장 포함 품목(주방가구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단, 거실우물천장은 기본제공으로 설치되며 비확장시에는 설치위치 및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 세대는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 레인지후드, 세대환기, 욕실 배기용 덕트가 발코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수전 및 배수관 등이 외기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동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희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 또는 천장속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구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세부 구성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개소 기준)	59C, 84D 외 전 타입	1,500,000	150,000	1,350,000	-
	현관 중문 (스윙 도어, 1개소 기준)	59C, 84D	1,500,000	150,000	1,350,000	-
조명	조명 스타일업	59A, 59B, 59C	4,000,000	400,000	3,600,000	※ 복층세대의 경우 최상층만 적용 ※ 알파룸 제외
	①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84A1, 84B, 84C, 84D, 170, 250, 260	4,500,000	450,000	4,050,000	
	② 복도/주방 매입등					
	③ 고급 식탁등	114A1, 114B, 225	5,000,000	500,000	4,500,000	
	④ 거실, 안방, 침실 고급 직부등	162PHA, 162PHB	6,000,000	600,000	5,400,000	
⑤ 거실, 안방, 침실 커튼박스 간접조명	170PH	6,400,000	640,000	5,760,000		
거실	거실 벽 스타일업 거실아트월 유럽산 세라믹타일 거실/복도/주방 시트판넬 적용	59A, 59C	2,000,000	200,000	1,800,000	※ 옵션 미 선택 시 거실아트월 제외부위는 벽지 마감 ※ 복층세대의 경우 최상층만 적용
		59B	2,500,000	250,000	2,250,000	
		84A1, 84B, 84D, 170, 260	2,700,000	270,000	2,430,000	
		84C, 250	3,500,000	350,000	3,150,000	
		114A1	3,000,000	300,000	2,700,000	
		114B, 225	4,500,000	450,000	4,050,000	
		162PHA	3,700,000	370,000	3,330,000	
		162PHB	4,100,000	410,000	3,690,000	
	170PH	4,400,000	440,000	3,960,000		
	거실 벽 스타일업 - 알파룸(수납강화형) 동시 선택 시	114A1	2,500,000	250,000	2,250,000	-
	거실 벽 스타일업 - 알파룸 슬라이딩도어 동시 선택 시	114B, 225	3,500,000	350,000	3,150,000	-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114B, 225	500,000	50,000	450,000	-	
복도	팬트리 시스템 가구	59A	500,000	50,000	450,000	-
		59C	800,000	80,000	720,000	-
		84A1, 84B, 84C, 170PH	1,000,000	100,000	900,000	-
		114B, 162PHB	1,100,000	110,000	990,000	※ 162PHB 타입은 팬트리1 적용
		162PHA, 250	1,200,000	120,000	1,080,000	-
		225	1,500,000	150,000	1,350,000	-
	260	1,300,000	130,000	1,170,000	-	
	팬트리2 시스템 가구	162PHB	1,000,000	100,000	900,000	-
	창고 시스템 가구	162APH	200,000	20,000	180,000	-
170PH		1,100,000	110,000	990,000	-	

주방	주방 스타일업 주방벽 및 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고급 주방수전, 캐슬 미드웨이 선반	59A, 59C, 114B, 225	2,700,000	270,000	2,430,000	※ 84C, 114B, 225, 250타입은 캐슬미드웨이 선반 미 적용 ※ 복층세대의 경우 최상층만 적용
		59B	2,200,000	220,000	1,980,000	
		84A1, 84B, 84D, 170, 260, 162PHB, 170PH	3,000,000	300,000	2,700,000	
		84C, 250	2,500,000	250,000	2,250,000	
		114A1, 162PHA	3,300,000	330,000	2,970,000	
	알파룸 수납강화형	114A1	7,700,000	770,000	6,930,000	※ 주방스타일업 옵션 선택시 적용
욕실	욕실1(공용욕실) 스타일업 유럽산 욕실벽타일 / ENG 젠다이 하부벽 및 욕조에이프런 / 비데일체형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 고급 세면기 수전 및 욕조수전 / 코너선반	59, 84, 114 전 타입, 162PHA, 162PHB, 170PH	3,300,000	330,000	2,970,000	-
		욕실2(부부욕실) 스타일업 유럽산 욕실 벽타일 / ENG 젠다이 하부벽 / 비데 일체형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 고급세면기 수전 및 레인샤워 수전 / 고급샤워부스	59, 84, 114 전 타입, 162PHA, 162PHB 170PH	3,100,000	310,000	2,790,000
	욕실1, 2 스타일업	170, 225, 250, 260 상층	6,400,000	640,000	5,760,000	※ 복층세대의 경우 최상층만 적용
	욕실3, 4 스타일업	170, 225 하층 / 250, 260 중층				-
	욕실5 스타일업	250, 260 하층	3,100,000	310,000	2,790,000	-
침실	안방 대형 불박이장 (슬라이딩형)	59A, 59C	5,000,000	500,000	4,500,000	-
		59B, 84B, 170, 260 162PHB, 170PH	6,000,000	600,000	5,400,000	-
		84A1, 84C, 84D, 250	6,500,000	650,000	5,850,000	-
		114A1	8,000,000	800,000	7,200,000	-
		114B, 225, 162PHA	7,600,000	760,000	6,840,000	-
	안방 대형 드레스룸 벽 패널형 시스템가구 적용	59A, 59C	1,500,000	150,000	1,350,000	※ 옵션 미 선택 시 벽지마감, 일반 시스템가구 적용 ※ 59B 타입은 가구도어 포함
		59B	1,700,000	170,000	1,530,000	
		84A1, 84D	4,000,000	400,000	3,600,000	
		84B, 170, 260	2,200,000	220,000	1,980,000	
		84C, 250	3,000,000	300,000	2,700,000	
		114A1	3,700,000	370,000	3,330,000	
		114B, 162PHB, 225	5,500,000	550,000	4,950,000	
		162PHA	6,000,000	600,000	5,400,000	
170PH	7,000,000	700,000	6,300,000			

침실2 불박이장	59 전 타입	800,000	80,000	720,000	-	
	84 전 타입, 114B, 170, 225, 250, 260	1,000,000	100,000	900,000	※ 복층타입은 상부 침실 1, 2 아래에 위치한 중층, 하층 알파룸에도 각각 선택적용 가능	
	114A1, 162PHA, 162PHB, 170PH	1,200,000	120,000	1,080,000	-	
	알파룸1, 2 통합형 불박이장	170, 250, 260	3,000,000	300,000	2,700,000	-
	알파룸3, 4 통합형 불박이장	225, 250, 260	3,000,000	300,000	2,700,000	-
침실1, 2 통합형 불박이장	170, 250, 260, 225	1,600,000	160,000	1,440,000	※ 침실1 불박이장(기본제공) 미 제공	

2) 가전기기옵션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TV	전 타입	550,000	55,000	495,000	* 13인치 * 모델명 : DM-N330	
욕실 복합 환기팬 (욕실1, 2 또는 욕실3, 4에 적용)	전 타입	1,100,000	110,000	990,000	* 모델명 : FHD3-C150P * 동일층 내 욕실 2개소 설치 기준	
욕실 복합 환기팬	250, 260	550,000	55,000	495,000	* 모델명 : FHD3-C150P * 복층하층 욕실 1개소 설치 기준	
3구 인덕션	삼성	전 타입	1,300,000	130,000	1,170,000	* 모델명 : NZ63DB657CAWS
	LG	전 타입	1,150,000	115,000	1,035,000	* 모델명 : BEI3ANHLBIE
빌트인 냉장고	삼성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 + 특화수납장)	전 타입	5,700,000	570,000	5,130,000	* 모델명 : [4도어] RM70F64R1X [3도어] RQ33DB74E1AP
	LG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 + 특화수납장)	전 타입	6,500,000	650,000	5,850,000	* 모델명 : [4도어] M62BAAA332 [3도어] Z334AAA151
식기세척기 (가구도어형)	삼성	전 타입	850,000	85,000	765,000	* 모델명 : DW80F71Y1SEW * 미 선택 시 기본 하부장 적용
	LG	전 타입	1,100,000	110,000	990,000	* 모델명 : DIE5PT * 미 선택 시 기본 하부장 적용

※ 복층세대는 최상층에만 주방TV, 3구 인덕션,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가 적용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계약금	(주)KB국민은행	086801-01-012788	롯데건설(주)
	잔금			

- 견본주택 내에서 추가 선택금액 계약금의 현금 또는 수표 납부, 신용카드 결제 납부는 불가합니다.
- 무통장 입금 혹은 계좌 이체시 동·호수 10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301호 홍길동 → “1010301홍길동“, 101동 1304호 홍길동 → ”1011304홍길동“)
- 상기 지정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대금”, “추가 플러스옵션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 및 발코니 확장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연기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의 변동(연기 등)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문자 또는 우편물 등으로 통보하며, 이는 고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해 책임 없음)

■ 추가 플러스옵션 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제조사 LG전자

[단위 : 원 / VAT포함]

타입	품목	옵션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 59B, 59C	프리미엄	선택1	거실 + 안방	4,300,000	430,000	3,870,000
		선택2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7,700,000	770,000	6,930,000
	AI + 인공지능	선택3	거실 + 안방	4,800,000	480,000	4,320,000
		선택4	거실 + 안방 + 침실1 + 침실2	8,300,000	830,000	7,470,000
84A1, 84B, 84C	프리미엄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6,300,000	630,000	5,670,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9,800,000	980,000	8,820,000
	AI + 인공지능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선택4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10,500,000	1,050,000	9,450,000
84D	프리미엄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6,300,000	630,000	5,670,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1,300,000	1,130,000	10,170,000
	AI + 인공지능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선택4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2,100,000	1,210,000	10,890,000
114A1, 114B	프리미엄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1,700,000	1,170,000	10,530,000
	AI + 인공지능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7,400,000	740,000	6,660,000
		선택4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2,500,000	1,250,000	11,250,000
114A1	프리미엄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수납강화형)	AI + 인공지능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9,900,000	990,000	8,910,000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7,400,000	740,000	6,660,000
		선택4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10,600,000	1,060,000	9,540,000
170	프리미엄	선택1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6,400,000	640,000	5,760,000
		선택2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하층] 가족실 + 주방2 + 멀티룸 + 알파룸1 + 알파룸2	19,600,000	1,960,000	17,640,000
	AI + 인공지능	선택3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선택4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하층] 가족실 + 주방2 + 멀티룸 + 알파룸1 + 알파룸2	21,000,000	2,100,000	18,900,000
225	프리미엄	선택1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선택2	[상층] 거실1 + 주방1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1 [하층] 거실2 + 주방2 + 멀티룸 + 알파룸2 + 알파룸3 + 알파룸4	24,300,000	2,430,000	21,870,000
	AI + 인공지능	선택3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7,500,000	750,000	6,750,000
		선택4	[상층] 거실1 + 주방1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1 [하층] 거실2 + 주방2 + 멀티룸 + 알파룸2 + 알파룸3 + 알파룸4	25,900,000	2,590,000	23,310,000
250	프리미엄	선택1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6,900,000	690,000	6,210,000
		선택2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하부 1층] 가족실1 + 주방1 + 멀티룸1 + 알파룸1 + 알파룸2 [하부 2층] 가족실2 + 주방2 + 멀티룸2 + 알파룸3 + 알파룸4	31,200,000	3,120,000	28,080,000
	AI + 인공지능	선택3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7,500,000	750,000	6,750,000
		선택4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하부 1층] 가족실1 + 주방1 + 멀티룸1 + 알파룸1 + 알파룸2 [하부 2층] 가족실2 + 주방2 + 멀티룸2 + 알파룸3 + 알파룸4	33,500,000	3,350,000	30,150,000
260	프리미엄	선택1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7,300,000	730,000	6,570,000
		선택2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하부 1층] 가족실1 + 주방1 + 멀티룸1 + 알파룸1 + 알파룸2 [하부 2층] 가족실2 + 주방2 + 멀티룸2 + 알파룸3 + 알파룸4	31,800,000	3,180,000	28,620,000
	AI + 인공지능	선택3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7,900,000	790,000	7,110,000
		선택4	[상층]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하부 1층] 가족실1 + 주방1 + 멀티룸1 + 알파룸1 + 알파룸2 [하부 2층] 가족실2 + 주방2 + 멀티룸2 + 알파룸3 + 알파룸4	34,000,000	3,400,000	30,600,000
162PHA	프리미엄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9,000,000	900,000	8,100,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4,400,000	1,440,000	12,960,000
	AI + 인공지능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9,800,000	980,000	8,820,000
		선택4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5,700,000	1,570,000	14,130,000
162PHB	프리미엄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9,000,000	900,000	8,100,000

	AI + 인공지능	선택2	거실 + 주방 + 식당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5,950,000	1,595,000	14,355,000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9,800,000	980,000	8,820,000
		선택4	거실 + 주방 + 식당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17,350,000	1,735,000	15,615,000
170PH	프리미엄	선택1	거실 + 주방 + 안방	9,200,000	920,000	8,280,000
		선택2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4,600,000	1,460,000	13,140,000
	AI + 인공지능	선택3	거실 + 주방 + 안방	10,200,000	1,020,000	9,180,000
		선택4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6,000,000	1,600,000	14,400,000

※ 추가 플러스옵션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는 공급계약, 발코니 확장계약,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과 별도로 진행되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와 수분양자가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추가 플러스옵션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는 신한자산신탁(주), 롯데건설(주), (주)쌍령파크개발과 무관하며, 따라서 추가 플러스옵션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에 대해서 변경, 취소, 추가는 신한자산신탁(주), 롯데건설(주), (주)쌍령파크개발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롯데건설(주)는 추가 플러스옵션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에 대한 하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 플러스옵션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플러스옵션II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금/잔금	IBK기업은행(주)	327-050097-04-026	(주)태원시스템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계약일 이전 납부 시 이자 없음)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등 납부계좌가 모두 상이하오니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01동 101호 : "1010101홍길동" 이라고 정확히 기재)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 시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 플러스옵션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본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매립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추가 플러스옵션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한 세대는 별도 매립배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복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자 보증하지 않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알파룸 수납강화 옵션 선택 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5대 설치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리모컨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의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지정, 마감재 색상, 디자인, 조명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행사 시 세부 사양 등 상세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주 관련 안내 및 기타사항

■ 입주예정일 : 2030년 10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60일 이상을 제공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입주관련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 3항 제 27호
- 입주자의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통보하고, 실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 전 보수완료 ⇒ ⑦ 보수완료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제 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제 37조, 제 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그 사실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입주자 등은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제 11조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요청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혼합주택단지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단지의 관리에 관한 일부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법」 제 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 73조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입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 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초등학교는 역동초등학교로 배치될 예정이며, 당해 단지와 초등학교 사이의 통학환경(거리, 시간 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인근 주택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입주 후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는 광주중학군에 배정예정이며, 향후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나 사업여건 변동, 인구수 및 학생수 변화, 학생배치 기준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는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부대시설	복리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주민카페, 게스트하우스, 키즈플레이라운지 등

■ 공동주택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동법시행령 제 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되며,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 36조, 제 37조, 제 38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아래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도로 및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서측에는 폭 20.0m ~ 30.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 밖 도로 및 경관녹지는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인허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에 쌍령근린공원(예정)의 청석로변 진입광장(버티컬스퀘어)이 신설될 계획이며, 도시계획공원으로 인허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공원시설 부지를 제외한 쌍령 근린공원 시설의 설계 및 시공은 발주처 분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에 위치한 광주시 G-스타디움 북측에는 지자체 폐기물시설(경기도 광주시 생활적환장, 경기도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양벌 맑은물복원센터)이 위치하여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광주시 G-스타디움 및 시민체육관이 위치하여 있으며,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각 공원들의 계획 및 단지 내 옹벽은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실 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옹벽디자인 및 경사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본 공사 시 사업주체 및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대지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명, 토목, 옹벽,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본 사업지는 산지 내 위치하여 단차로 인한 옹벽이 많으며, 약 15m 이내 높이의 옹벽이 설치됩니다. • 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자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웬스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외곽 경계에 웬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분양홍보물(모형,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역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시 아파트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옹벽디자인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현장은 2024년 12월 최초 사업승인완료(2024년 1월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친환경인증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하지 않습니다.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하지 않습니다. • 단지 조경 상품개선을 위한 설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외관, 야간 경관조명 계획,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 위치한 경강선 및 수서~광주간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소방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p>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 고지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제공품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합니다. • 가구, 벽체 등 이질재가 접하는 부위의 마감 방법은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모든 타일의 경우 시공여건에 따라 나누기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닙니다.
<p>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59B, 84A1, 114A1 타입이 건립되었으며, 계약자의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 배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가 거울상 반전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창호의 열림방향은 반전되지 않는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는 59타입은 WHITE(화이트)형으로, 84, 114, 170, 225, 250, 260, PH 타입은 BEIGE(베이지)형으로 시공되며 별도의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 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합니다.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 내측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유상옵션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기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p>공동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동출입구 등), 지하출입구, 선근,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2개층 높이(PIT층 및 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105동 층벽 및 옥상구조물에는 조명형 B.I가 설치되며, 101동 층벽에는 특화층벽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 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동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 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물놀이시설,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크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수경시설은 수질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나 음용할 수 없으며,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재기반 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 내부 및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고 필로티 인근에 휴게시설, 포켓정원 등 조경시설이 인접하게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 IP(전용회선) 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포켓정원, 휴게소, 수경시설, 광장,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산책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음용할 수 없으며, 관상용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고 물놀이 시설의 경우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텃밭(팜가든) 설치 시 농기구 및 보관함은 별도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당 단지는 확장 시 거실 및 안방에 조망형 이중창 적용으로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사다리차 이용 시 유리난간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난간 상부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를 계획하지 않음), 이 경우 귀책은 입주자에게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조경석 쌓기, 화계,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쌓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시 아파트의 현장 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택배, 이삿짐, 구급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전층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천정고를 적용합니다.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 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7개소로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인근 지상층에 계획되어 있고 동 별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사이즈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와 크기, 세대와의 거리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합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 차량 주출입구 인근에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인 키즈스테이션이 조성되며,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차량 동선, 차량 대기공간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시와 다르게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상부에는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이며, 출입을 위한 유지관리용 출입문 또는 옥외사다리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 조경토심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의 철재난간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현관 열림과 승강기 호출기능 외에 세대현관 제어 기능은 없습니다. 또한 원패스 시스템 업체로부터 제공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지원되며, 이후 유상으로 변경됩니다.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 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 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2, 104, 106동 옥상층과 지반층 화단(103동 서측, 107동 동측/서측)" 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02, 104, 106동 옥상층, 지하 1층 헬룸(3개소), 지하 3층 헬룸(3개소), 지하 5층 헬룸(3개소)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 중계기 및 안테나 설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유지관리는 3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홈네트워크망, 홈게이트웨이 등 필수 설비 유지보수는 이와 별개로 관리주체가 수행해야 합니다.) •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화가 가능한 '롯데스마트홈' 서비스는 3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월패드, CATV 등에서 확인 가능한 단지 내 놀이터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모든 입주민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 I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지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차량출입구는 서측에 2개소가 설치되며,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과 함께 이용하는 출입구로 해당 출입구를 통해 진입 시에는 지하 6층부터 공동주택 전용 주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회차공간 및 이외 연계된 키즈스테이션은 서측 차량 주출입구에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 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동 출입구에 필로티 계획되어 있으며, 필로티 일부공간에 자전거보관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별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합니다. • 각 동별 지하층 동출입구 인근 제연헬룸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에서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부에는 휴게시설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동측에 위치한 쌍령근린공원 대지경계를 따라 단지 내 3단 옹벽이 설치되어 101동, 102동, 103동, 106동, 107동 일부 저층세대 (약1~5층세대 해당)의 경우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필요 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서측에는 20.0m ~ 30.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서측 단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소음,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북동측에 주민운동시설,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북측에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동 남서측에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동 2호라인 하부, 3호 라인 남서측, 4호 라인의 남서측에는 DA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서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1동 5호라인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남서측 단차하부에 주출입구 문주 및 지하주차장 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서측 단차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 키즈스테이션, 회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서측에는 20.0m~30.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출입구 및 문주, 경비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서측 단차 하부에 드랍존,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북서측에는 외부계단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남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북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남동측에 휴게공간 및 수경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3호라인 하부, 5호라인 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동 북서측에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저층세대 일부에서 시야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야간 경관조명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2동 1, 3호라인 소방 에어매트 설치로 인해 동출입구 구조물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3호라인 동출입은 가능합니다.
- 103동 서측에는 20.0m~30.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서측 단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이 계획되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하부 지하 1층 ~ 지상 1층에는 주민카페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북동측에 외부계단 및 쓰레기 분리수거장, 남서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탑라이트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북동측에 휴게공간 및 수경시설, 남서측에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1호라인 하부, 3호라인 동측에 DA가 설치되어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4동 서측에는 20.0m~30.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4동 남측 및 북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4동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공간, 유아놀이터가 북동측 및 남서측에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남서측에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야간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4동 2호라인 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5동 서측 20.0m~30.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중,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5동 동측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5동 남동측에 어린이집, 동측에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공간, 남측에 수경시설 및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5동 남서측에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야간 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5동 2호라인 하부, 4호라인 하부, 5호라인 동측에 DA가 설치되어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6동 서측에 어린이집, 수경시설 및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이, 북측에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동측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 1, 4, 5호 라인 하부, 3호라인의 서측에 DA가 설치되어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6동 하부에는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은 데크층(EL+80) 진입이 불가하며, 지상 1층 필로티(EL+82)에서 진입이 가능하므로 출입동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7동 북측에 수경시설 및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7동 남측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5호라인 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7동은 데크층(EL+80) 진입이 불가하며, 지상 1층 필로티(EL+82)에서 진입이 가능하므로 출입동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동 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101동(3세대조합)은 2대, 101동(2세대조합)은 1대, 102동(2세대조합)은 2대, 102동(3세대조합)은 3대, 103동(2세대조합)은 2대, 103동(3세대조합)은 3대, 104동(2세대조합)은 1대, 104동(4세대조합)은 3대, 105동(2세대조합)은 2대, 105동(3세대조합)은 3대, 106동(2세대조합)은 2대, 106동(3세대조합)은 3대, 107동(2세대조합)은 1대, 107동(4세대조합)은 3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1층 보행 진입을 위한 수직코어는 총 3개소로 각 코어별 엘리베이터는 2개소씩 계획되어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의 경우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1 인근 단지의 북서측에 설치되는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코어1)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지하 7층 및 부대복리시설과 지상 1층이 연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지하 5층부터 주차장과 연결되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3 인근 단지의 남서측에 설치되는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코어3)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지하 7층과 지상 1층이 연결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입구 회차구간에 설치되는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코어2)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각 층의 부대복리시설과 지상 1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지하 5층부터 주차장과 연결되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택배 우편물보관함 세대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택배함은 각 동별 지하1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코어별 1개소 이상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개수,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 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는 지하1~5층 주동하부 PIT 및 지하층 일부 공간에 분산되어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59타입, 84타입은 1.5m x 1.5m x 2.1m, 114타입 이상 (복층 및 팬트세대 포함)은 1.5m x 2.0m x 2.1m 규격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본형(1.5m x 1.5m)은 해당 동 지하 1~5층에, 확장형(1.5m x 2.0m)은 해당동 지하 1~2층 내에 분산되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1동은 지하 1~3층 주동 하부 PIT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2동은 지하 1~4층에 주동 하부 PIT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3호조합 공용홀에서는 세대창고 직접 출입이 불가하며, 세대창고까지 접근동선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은 지하 1, 2, 5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부 세대창고는 지하주차장에서 출입하며 세대창고까지 접근동선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4동은 지하 1~5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부 세대창고는 지하주차장에서 출입하며 세대창고까지 접근동선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은 지하 1~5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일부 세대창고는 지하주차장에서 출입하며 세대창고까지 접근동선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6동, 107동은 지하 1~2층 주동 하부 PIT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은 지하 7층 ~ 지하 1층까지 7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3 상부로 비상차량동선이 계획되어 지하 3층 주차장 및 지상 1층과 연결됩니다. 단, 비상시 및 유지관리 차량만 통행 가능하도록 진입부에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지하 7층은 상가 전용의 주차공간으로 지하 6층 진입램프 시작부에 공동주택 출입을 위한 주차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전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됩니다. 지하주차장 이용 시 택배차량의 정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 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및 각 층별로 주차공간의 배치 및 규모가 상이하오니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103동, 104동, 106동, 107동은 지하주차장 1~5층에서 동 출입이 가능하므로 지하주차장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은 지하주차장 1~5층 및 지하7층에서 동 출입이 가능하므로 지하주차장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은 전 층(지하 1~7층)에서 동 출입이 가능하므로 지하주차장 사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지하 3~5층 2호조합 동출입구의 경우 접근로가 긴 복도로 형성되어 동선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7동 지하 1~5층 4호조합 동출입구의 경우 접근로가 긴 복도로 형성되어 동선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 상 구조물의 허용오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경미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랜치는 원활한 배수를 위한 시설로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하자가 아닌 사항으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일부 밀폐된 공간은 환기 부족시 일부 바닥면 및 벽면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전기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기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지하주차장 외벽은 창호 없이 외기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물고임, 결로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쓰레기 보관함은 현재 별도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 쓰레기 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거나, 향후 계획 변경 시 근린생활시설에 독립된 쓰레기보관함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변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전용 출입구,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소음 및 냄새,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코인세탁실은 101동과 102동 사이 서측 단차하부 지하 5층에 설치되고 그 층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및 게스트하우스는 101동과 102동 사이 서측 단차하부 지하 1층에 설치되고 그 층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은 106동 하부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는 『주택법』 제 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 12조 제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의 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 12조 제 3항 및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2 제 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등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제 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함께 돌봄센터는 102동과 103동 사이 단차하부 지하 6층에 설치되며 그 층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인접 라운지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지상 및 지하 주차장과 연결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즈카페는 101동과 102동 사이 서측 단차하부 지하 4층에 설치되고 그층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클럽(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은 101동과 102동 사이 서측 단차하부 지하 3층과 지하 2층에 설치되고 지하주차장과 동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클럽(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샤워/탈의실 등)은 102동과 103동 사이 단차하부 지하 5층, 지하 4층, 지하 3층에 설치되고 지하주차장과 동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다이닝카페는 103동 하부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설치되고 진입구는 수직동선과 연계된 별도의 로비가 없이 외부로 통해 진입 가능하며, 지하 1층은 지하주차장과 외부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 1층은 외부 엘리베이터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고, 화장실은 지상 1층에만 계획되어 있으며 실 내부에 엘리베이터는 없고,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클럽 인근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지하 7층과 지상 1층까지 수직 연결되어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듀클럽 인근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근린생활시설 공용부 진입구(지하 6층, 지하 7층)와 일부를 공유하며, 지하 7층과 지상 1층까지 수직 연결되어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이용 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대복리시설의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은 별도 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공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별도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놀이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측 차량 주출입구인근 차량 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드랩존'(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별도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놀이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 및 디자인은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바뀌거나 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커뮤니티 CG 등)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 프로그램, 마감재, 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5동 인근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주 및 경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서측 차량 주출입구에는 진출입 관리가 가능한 경비실이 설치되고, 서측 차량 부출입구에는 별도의 경비실이 설치되지 않음.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주차차단기는 지하 6층 진입램프 시작부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차차단기는 경비실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문주 계획 및 설치로 인하여 본공사시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주 및 경비실의 형태, 디자인, 크기 등은 현장여건 및 동선개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 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 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 두께만큼 줄어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으로 일부 시공 상 허용오차 이내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4A1, 84B, 84C, 84D타입 단위세대는 미러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러세대의 경우에도 창호의 열림방향은 변동되지 않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쪽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욕실에 설치되는 뒷선반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길이 및 폭의 경미한 치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확장세대의 경우 거실 및 안방은 조망형창호(유리난간일체형)로 시공되나,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침실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철재난간형 창호로 시공되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층세대의 경우 하부층은 별도 우물천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층(3개층 포함)세대들은 1가구가 분양받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하부 층과 월패드 작동 분리 등 불가하니 계약 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5타입은 하부층에 별도의 보조현관이 계획되지 않습니다.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됩니다.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본 시공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무상 선택형 및 유상 옵션은 확장 시 선택 가능하며, 확장 미 선택 시 기본 시공 내용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및 가전 설치시 마감재별 두께 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펜트하우스는 하부 세대와 욕실 등 배치가 일부 상이하여 층상으로 횡주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 시 거실, 복도 등에서 마감재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 1층 특화, 펜트하우스 세대에 면하는 테라스, 선큰 데크는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용면적으로, 유지보수 사유 발생 시 세대를 통하여만 접근이 가능하므로 입주자는 유지보수 작업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공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인허가도서를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가구조명, 액세서리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운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운수분배기는 본 공사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 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C, 114B, 225, 250타입 주방 행거 ACC 2종이 미적용됩니다.

창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창호 디자인 및 색상, 프레임 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확장 세대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분합창이 이중창으로 설치되고, 외부발코니에는 철재난간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및 안방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합니다. 펜트하우스의 세대의 경우 거실, 안방, 침실, 알파룸은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으로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합니다. 펜트하우스 욕실에 창호가 설치되는 경우, 침실에 설치되는 발코니 이중창과 동등한 단열성능의 창호가 설치되나, 욕실의 다습환경 특성상 창호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외벽 내부면에 단열재가 시공되어 도어에는 단열성능이 없으며, ABS 재질로 제작되어 세탁기, 건조기 등 일부 소음이 주방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과 주방 간에는 하부 단차가 없으므로 물청소 시 실내로 물이 유입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업지는 단일 창호브랜드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창호의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손잡이 등 디테일은 견본주택 내 전시품목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통합단자함은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써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매립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추가 플러스옵션II(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한 세대는 별도 매립배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복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자 보증하지 않습니다.) 욕실 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욕실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펜트하우스 타입은 샤워부스바닥, 욕조바닥, 욕실2 양변기 바닥 난방코일 미설치) 59A 타입은 세탁기 옆 벽면에 별도 배수배관 연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3개층 복층세대 타입의 환기제어는 각 층별에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상부층에서 통합 제어 불가)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후면 벽면 하부에서 주방 싱크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공 CD관이 매립 설치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 분기하고 배관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됩니다.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수전 높이 및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사이즈 및 높이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조의 자재는 표면경도가 낮아 사용 시 미세 흠집이 발생되기 쉬우며, 이는 제품 자체의 특성으로 하자보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용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며, 창문개방에 따른 동파발생의 귀책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우수, 배수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한 종류를 포함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정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커튼박스가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합니다. • 스타일업(마감재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 제공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A1 타입 보조주방 + 주방 장식장 + 팬트리 유상옵션은 주방 스타일업 옵션 적용 시 선택 가능합니다. • 114B, 225타입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아트월 타입 적용 부위는 '알파룸 슬라이딩'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하부장 내 주방 살균수를 위한 별도 장치가 설치됩니다. • 84C, 114B, 225, 250타입 주방스타일업 선택 시, 주방 미드웨이 선반이 미적용됩니다. • 59A, 59C, 84A1, 84B, 84C, 114B, 225, 250, 260, 162APH, 162BPH, 170PH 타입의 복도 팬트리 및 복도 창고는 가구도어만 기본제공 되며, 내부 시스템가구는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복층형 타입의 경우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층별로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복층세대의 경우 하부층은 조명 스타일업, 거실 벽 스타일업,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이 불가하며, 주방 가전기기 옵션 및 빌트인 냉장고 선택형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장 옵션 미 선택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 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건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기는 전시품목이므로 실 시공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스타일업(마감재 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시트판넬의 줄눈은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에서 진행하지 않는 일부 품목에 관하여, 시공사는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제작물 및 인쇄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건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건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 근린공원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써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분양상담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당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리미엄보장, 추가할인, 계약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행위 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4.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행위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주의사항

-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②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발코니 축·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⑤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 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⑧ 건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 3항 제 29의 2호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유효높이) : 2.7m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7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 48조 제 3항 및 제 48조의 3 제 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능력	내진 I 등급
------	---------

-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 I 등급입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 3항 제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 공사,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 제 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 제 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 제 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8조 제 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8조 제 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적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 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별표 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10조 제 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10조 제 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제3호)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 및 「주택법」 제 39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광주시 쌍림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청자 : 신한자산신택 주식회사
3. 대지위치 : 경기도 광주시 양발동 산54-3번지 일원
4. 성능등급 :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소음을 차단성능	★
2. 생활소음을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대수질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권유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본에너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도시사 일드·싱드양(맹꽁기·주렁가리 반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
7. 신·재생에너지 사용	★
8. 적당수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	★★
9. 온난층 보보를 위한 차등열원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숙연 계층(EPTD)의 사용	★★★★
11. 적당수 차폐의 사용	★★★★
12. 차원순환 차폐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장 차폐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권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제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름)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시뮬레이션모델링제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와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전거차량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인접편의시설과의 연계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7. 사용자 메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음향드레이크 및 스마트층	★
14. 방범안전 문턱스	★
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비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괴방지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광주시 쌍림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G-SEED-P-2026-0234-5
건축주 : 신한자산신택 주식회사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준공(예정)일 : 2027. 12. 31.	유효기간 : 2026.03.05. - 사중중언일과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양발동 산54-3번지 일원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층수 : 지하7층 / 지상32층	인증등급 : 무량(그린3등급)
면적 : 222,343.5455㎡ (평가면적: 215,920.4318㎡)	인증기준 : 녹색건축인증기준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5-550호, 인증기준 통정세칙(2025.12.10.))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고무건축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무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한국부동산원장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광주시 쌍림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1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 26-주-에-11-0024
준공연도 : 20271231	평가자 : 김성희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양발동 산 54-3 번지 일원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층수 : 지하7층 / 지상32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면적 : 222,343.5455㎡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고무건축	



구분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²·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m²·년)	1차 에너지소비량(kWh/m²·년)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kg/m²·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4.9	80.2	61.3	16.6
급탕	30.7	34.0	25.1	6.9
조명	5.5	4.5	12.5	2.1
환기		3.0	8.3	1.4
합계	81.1	121.7	107.2	27.0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 V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2월 27일

한국부동산원장

※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 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82026-101-0003700	오천팔백팔십억구천칠십오만원 정 (₩588,090,75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제 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 21조 제 1항 제 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 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 샷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 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 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 1항 제 4호부터 제 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 1항 제 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 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 1항 제 2호에서 제 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당사자 본 아파트 “대상사업” 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쌍령파크개발,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① 본 공급물건은 시행위탁자인 (주)쌍령파크개발이 시행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주)쌍령파크개발이고, 신한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사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②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③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계약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주)쌍령파크개발과 시행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의 모든 권리,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주)쌍령파크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매도인)인 신한자산신탁(주)의 매수인(분양자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도 본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주)쌍령파크개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④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공급금액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⑤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인 신한자산신탁(주)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주)쌍령파크개발 및 시공자인 롯데건설(주)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시 분양계약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⑥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신한자산신탁(주)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내에서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주)쌍령파크개발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⑦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⑧ 본 관리형토지신탁 내용은 본 모집공고 및 공급(분양)계약서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 VAT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회사명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상지이앤씨(주)	(주)단에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5,516,486,800원	₩1,371,562,500원	₩922,319,018원
사업자등록번호	139-81-13044	215-86-12780	139-81-13044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쌍령파크개발	롯데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134211-0261159	110111-001476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동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산55-2 1호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 홈페이지 :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27/main/index.do>

■ 견본주택 :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494

■ 분양문의 : ☎ 1899-2340

- ※ 본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시됨을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상의 기재사항 오류 및 미 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 및 공사범위 외 마감재 등은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